파견근로자 운용에 관한 규정

제정 2012. 8.22 개정 2018.11.20 시행 2018.11.21 개정 2025. 3.24 시행 2025. 4. 1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파견근로자를 운용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근로자파견"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·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파견사업주"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.
 - 3. "파견근로자"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.
 - 4. "근로자파견계약"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공사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.
- 제3조(업무내용) 파견근로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4조(파견근로자선임) ①파견근로자의 선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장이 행한다. 다만, 본사는 인사부서가 속한 본부장에게, 지사는 지

사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②선임상 결격사유, 선임시의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근로자 파견계약과 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.
- 제5조(계약해지) 사장은 파견근로자가 제7조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정하는 해지 사유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
 - 2. 규정 또는 업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
 - 3. 신체.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
 - 4. 업무이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
 - 5.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
 - 6. 기타 임용사유가 소멸된 때
- 제6조(파견기간)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공사·파견사업주·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<개정 2025.3.24>
- 제6조의2(계약직으로의 전환) ①상시·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임용할 수 있다. 다만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계약직으로의 전환은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 시행한다. 다만,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.
- ③계약직으로의 전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11.20.]

- 제7조(근로자파견계약) 공사와 파견사업주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용사업관리책임자) 공사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제9조(사용사업관리대장) ①공사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- 제10조(준용규정) 파견근로자 운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공사제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11.20.>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5.3.24>

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